

자산관리수탁업무 규정

제정 2009.10. 1 규정 제3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영하는 수탁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 “수탁 자산관리업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자산의 투자·운용업무와 그 부대업무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수탁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자산의 구분관리 등) ① 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공사의 고유자산 및 부동산투자회사 외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고유 업무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간의 수행체계 및 인력과 물적 설비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 자산관리업무 전담조직의 설치) 공사는 수탁 자산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전담부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5명 이상의 자산운용전문인력과 준법감시인을 포함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업무의 수탁) 공사가 수탁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자산의 투자운용방법) 공사가 수행하는 수탁 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2. 부동산개발사업
3. 부동산의 임대차
4. 증권의 매매
5. 금융기관에의 예치
6.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제8조(영업보고서 제출) 전담부서장은 국토해양부의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에 따라 매분기 종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비치 및 열람) 전담부서장은 국토해양부의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주주 또는 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공사는 수탁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수탁 자산관리업무 수행 시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한 내부통제기준 및 업무지침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09.10.1〉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